

나!
학교가기 싫어?!



신교수퇴진과 성폭력학칙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차례

딱딱하지만 꼬옥 읽어야 하는 글들..

신정휴교수 사건에 대하여

— 2

성폭력의 개념

— 5

학칙제정과 그 이전의 우리의 움직임에 대해

— 13

<공트> 이젠일 저만 겪는 거 아니죠?

— 17

쉬엄쉬엄 읽을 글들..

우리 이젠거 한번 생각해봐요 ^^;

— 20



신정휴교수 사건이 무엇인가?

신교수 사건은 일명 '우조교' 사건이라고 불린다. 우리나라에 성적괴롭힘(성희롱)에 관한 논의를 대대적으로 불러왔던 사건이다. '서울대 교수'라는 지위가 더욱더 이 사건을 이슈화 하는데 한 몫을 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만큼 오랫동안 법정싸움을 했던 사건이다. 피해자를 피해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타고, 이 사건은 오랫동안 '우조교 사건'이라고 불렸다. 이제 우리는 5년여를 참아오면서 더 이상 신교수를 '교수'라 부를 수 없기에 이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학우들을 위해 신교수 사건을 간략하게나마 알려내고자 한다.

이 사건은 93년에 우조교가 학생들에게 호소하는 글을 붙이면서 학생들 사이에 알려지게 되었다. 우조교는 화학과의 유급조교 - 대학원생이 아니라 과에서 실험등의 조교로 따로 채용하는 조교였으며 92년 2월부터 1년을 근무하였다. 그녀는 93년 재임용에서 탈락하였으나, 재임용 탈락의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고, 재임용 탈락의 이유는 자신이 성적인 접근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전임자들을 찾아보고 피해자가 자신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거의 같은 성적 괴롭힘(성희롱)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성적 괴롭힘(성희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험기기의 사용법을 가르쳐 준다는 이유로 20-30회정도 뒤에서 포옹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거나, 손을 잡거나, 의도적으로 신체 일부를 접촉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또, '날씨가 좀 서늘해지면 실험실 사람들 모르게 자신과 단둘이서만 넥타이 매고 가는 곳에서 입방식을 하자'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심부름 등의 기타 명목으로 우조교를 부른 다음 위아래로 훑어보며 몸매를 감상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또, 같이 관악산에 산책가기를 제안하면서 신교수의 연구실

에서 옷을 갈아입으라는 등의 제의를 하였고, 그에 대해 거절하자 민망할 정도로 얼굴을 붉힌 일이 있었다는 등이다. 우조교의 전임자는 더욱더 노골적인 성추행을 당한 경우도 있다. 우조교의 전임자들은 모두 여성이었고, 후임자 역시 여성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신교수의 성적 괴롭힘이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상습적인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우조교의 주장에 화학과 학생회와 대학원생들과 총학생회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실여부를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우조교의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 그 이후 신교수 퇴진운동과 우조교의 법정투쟁을 도왔다. 그리고 실제로 여성단체들이 여론화와 법정투쟁의 많은 부분을 담당해 오셨다.

그동안의 법정투쟁은 다음과 같다. 우조교의 고소에 대해 법원에서는 1심, 상고심, 항소심의 3심이 있었다. 94년 4월 18일에 있었던 1심 선고공판에서는 신교수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여 신교수가 우조교에게 3천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신체 접촉행위, 심부름으로 연구실에 들어오는 우조교를 아래위로 훑어보는 등의 무형적인 폭력들, 결정적으로는 산책 제의에 대한 거절로 인해서 재임용 거부라는 보복적 행위 사실 등이 성희롱의 근거로서 인정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95년 7월 25일에 있었던 2심은 이런 1심의 판결을 완전히 뒤엎었다. '성적 괴롭힘은 그 성적인 성격이 노골적이고 성적인 의도가 분명히 간취될 수 있어야 한다.' '단지 개인적으로 분노, 슬픔, 울화, 놀람을 경험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그것을 넘는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등의 무리한 요건-성희롱의 범주를 매우 좁게 보는-을 들어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우조교가 연애했던 기기조작을 할 때 신교수가 성적, 신체적 접근을 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의를 표시한 적이 없다고 보고 또 신교수가 산책 제의를 한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있지 않아 신교수의 성희롱 범

죄 모두를 일상생활의 해프닝 정도로 보는 식의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갔고, 2년 반을 기다려 98년 2월 10일에 3심에서 다시 신교수가 우조교를 성희롱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은 일단락 되었다. 직장내에서 교수와 제자라는 권력관계에 의해 일어난 성희롱을 제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5년이라는 세월동안 계속 몇 번의 판결번복이 있는 후 겨우 승소한 것이다. 하지만 3심이 승소한 부분은 신교수와 성희롱 부분만이고 신교수가 우조교에 대한 재임용 추천을 하지 않아 우조교가 조교재임용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복해고가 아니라 우조교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판결을 여전히 고수했다. 또한 신교수 외에 당시 총장과 법무부장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의 상고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다. 이런 식의 미흡한 판결이 나오게 된 이유를 알기 위해 3심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성희롱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인격권이 침해된다"라고 규정하여 직장내에서 권력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성희롱이나 여성의 일할 권리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결국 권력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안타까움을 남긴 것이다. 그런데 이런 3심의 판결에 대해 비평하기 이전에 우리가 분노해야 할 일은 신교수가 지금도 대학원 강의를 하며 서울대의 교수로서 제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폭력의 개념

무엇이 성폭력이고, 무엇이 성폭력이 아닌가?

새터가 끝나고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중에 모학교 어떤 과의 남학우들이 윗옷을 벗어던지기 시작했다. 도대체 왜 벗은 건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리고 줄을 맞추어 뛰었다. 그들은 왜 추운 겨울에 무엇을 위하여 옷을 던지고 줄을 맞춰 뛰어다녔을까. 물론 이 경우는 총여학생회에 제보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총여학생회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목격한 자로서 명백히 성폭력이라고 규정지은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일상속에서 우리들이 너무도 쉽게 지나쳐버리는 여성과 남성의 권력관계를 극명히 보여주는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성폭력 박물관' 중에서)

과연 이러한 일을, 그리고 이와 유사한 일들을 성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혹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폭력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무성하다. 신교수 사건, 약대 구교수 사건, 자연대 새터 촌극, 그 밖의 이야기들. 이렇게 성폭력 사건이 드러날 때, 그리고 그와 함께 성폭력의 예방과 처벌에 대한 필요성이 주장될 때, 별것 아닌 일들을 싸잡아서 성폭력이라 이름 붙이며 마치 마녀 사냥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또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 하나 둘씩 성폭력이라고 이름붙여지는 것을 보면서, 성폭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혼란스러워 할지도 모르겠다. 어쨌거나 성폭력의 문제는 이제 어찌보면 정치적인 문제로, 어찌보면 윤리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중에 하나인 것임은

분명하다. 아무렇지 않게 보아 넘겨온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워져야 한다면 말이다. 성폭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조차 우리에게 혼란으로 다가온다면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1. 성폭력을 둘러싼 지배적인 담론들.

정조의 보호

강간이 범죄라는 사실은 매우 오래되고도 널리 공유되고 있는 관념이다. 그러나 실제로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간주되는 성적 행동의 범위는 매우 좁다. 전통적으로 강간은 남성이 강제력을 행사하여 여성의 정조를 파괴하는 범죄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그 여성이 정조가 약한 여성일 경우에는 강간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정조란 태어날 아기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상속 등 공동체의 사회관계를 안정화하려는 문화적 장치이며, 따라서 정조에 관한 죄란 결국 '공동체의 재산으로서의 여성의 재생산적 신체에 대한 죄'라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관점은 부녀에 대한 간음(성기삽입)만을 강간이라고 보는 형법상 강간죄 규정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강간죄의 객체가 왜 꼭 '부녀'여야 하며, 부녀는 꼭 왜 '생물학적 재생산 기능을 갖춘 몸'으로만 파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형법에도 얼마전까지는 강간 등 성폭력 범죄가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순결-이데올로기가 엄존하는 우리 사회에서 피해자에게 정조를 잃었다는 죄의식을 강요하고 신고를 꺼리게 만드는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국 1995년 형법개정으로 제 32장의 정조에 관한 죄

가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뀔으로써 정조라는 말은 법조문에서 사라졌으나 정조를 대신하는 그 어떤 대안적 보호법익도 제시하지 않은채 단지 세부항목의 편의적 조합으로 장 제목을 삼는 이런 식의 법개정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성폭력이 실제로 무엇을 침해하는 범죄이며, 어떤 윤리적 기준에서 판단, 통제되어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처음부터 회피한 채 논의를 봉쇄해버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성폭력 특별법 역시 '성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개념규정은 제시하지 않고, 단지 형법 제 몇조, 몇조에 해당하는 죄가 성폭력 범죄라는 식으로 나열되는데 그치고 있다.

피해자의 도덕성 (?)

우리사회에서 성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과연 피해자가 '보호받을 만한 여성인가'이다. 이는 여성은 보호받아야만 하는 위치에 있는 존재이며, 그것에는 조건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기 몸의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특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 보호라는 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존재로 여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조건들에는 명백하게 현사회의 위계가 반영되어 여성들을 억압하고 있다. 이 속에서 성폭력은 폭력임에도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큰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회문화적으로 특수한 폭력이 된다. 그러면 보호받을 여성이란 어떤 여성인가? 처녀일수록, 성에 무지할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강간에 죽지 않을 만큼 저항할수록, 평소 행실이 말 그대로 순진 무구할수록 그 여성은 보호받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여성일수록 성폭력에 무방비인 것은 또 역설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라면 피해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할 수 없게 된다. 보호받기 위해 자신의 보호받을 만한 가치-즉 정조-를 지녔었음을 죽을힘을 다하여 입증하는 순간, 그 상실된 정조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다. 폭력을 폭



력으로 인지하여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부당한 지배자의 관점대로 폭력을 관계로 인지하여 오는 성적 수치심과 자기 모멸 속에 빠지는 것이다. 꼭 강간의 경우에만 그러한 것은 아닐 것이다. 술자리에 서나 M.T에서나, 혹은 그 밖의 자리에서 성희롱을 당했을때, 그것을 공론화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일이 어려운 것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순결-이데올로기와 더불어 어느 정도 피해자의 책임성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일 것이다.

성기가 삽입되었느냐, 아니냐? 또는 성적 접촉이 어느 정도로 심했느냐?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강간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 즉 성기가 삽입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기준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는 단적으로 우리 사회의 성기중심적인 성인식과 남성지배권력의 성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남성의 경우 성에 대한 생각을 성기중심적인 신체접촉에 의한 행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남성의 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은 여성의 성을 대상화된, 주체성이 없는 성문화로, 남성의 성문화를 지배적이고 공격적이며 폭력적인 성기중심적 성문화로 만들어 버린다. 남성 욕구중심의 성에서 여성의 성은 단지 남성욕구를 채어주는 육체적인 대상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수많은 성폭력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며, 성폭력에 대한 규정 또한 남성중심적인 시각으로 쓰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강간과 성희롱의 차이는 명백하다. 하지만 성추행과 성희롱의 차이는 누구나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성폭력을 단지 성관계로만 인식하는 잘못된 성인식은 신체적 접촉의 많고 적음의 양에 따라 폭력의 기준과 그 처벌의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에서도 성희롱이나 성추행 그리고 강간, 윤간 등 수많은 또다



른 개념들이 형성되어 있다. 성희롱과 강간의 인식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성폭력에 대해 단지 신체적 접촉의 많고 적음에 그 기준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 속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는 사라지면서 피해자인 여성의 인권은 침해되어지고 만다. 수많은 성폭력에 대한 언어의 남용은 피해자를 여성으로써만, 피해자를 피해자가 아니라 손해를 친 또다른 손바닥으로만 바라보게 만들 뿐이다.

2. 성폭력에 대한 관점은 어떠해야 하는가?

성폭력에 대한 법적인 규정과 더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닌 통념들은 이러한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남성중심적인 관점으로 일관하며 개인간의 관계의 문제, 혹은 피해자의 책임의 문제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가운데, 성폭력과 관련한 모호한 기준의 개념만이 넘쳐날 뿐이다. 강간만 아니면 되는 것인가? 성추행만 아니면 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성희롱만 아니면 되는 것인가? 기준을 묻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라기 보다는 지나치게 극단적인 표현일지도 모르지만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바램일지도 모른다. 이름을 붙이고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폭력 담론의 근저에 깔려있는 남성중심적이고 일방적인 인식의 틀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일이다.

정조의 보호가 아닌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확보의 문제

아직도 법담론 속에서는 여성의 몸이 정조와 재생산기능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의미구조 속에서 여성의 몸이 여성 자신의 것이며,

그녀의 삶과 정체성의 터전이라는 관념이 자리잡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규정의 보호법익이 결코 정조가 아니며,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점만 확실히 할 수 있다면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 강간죄의 객체를 여성에 국한하는 것은 현실적합성도 없을뿐더러 성폭력과 정조 개념의 분리를 더욱 어렵게 하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성폭력이란 결국 타자의 몸에 대한 동의 없는 침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것을 명백하게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성별에 관계없이 성적자율권(자기 몸에 대한 권리-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저항이 아닌 동의의 문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법적, 제도적 인식은 실제로 표명된 여성의 거부의를 철저히 무시한다. 민주적인 권리가 기본적으로 언어적 동의에 의한 사회계약에 기초함에도 불구하고 성관계에서 여성의 동의 혹은 비동의를 언제나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은 동의라는 실천에 참여할 능력을 결여한 존재로 간주되고 있다. 여성들은 개별 생활에서 항상 동의하거나 명백한 거부하는 부인되고 거부의 표현도 항상 동의로 해석되어버리는 존재로 취급된다. (여성의 No는 Yes이다.) 여성의 언어적 거부에 대한 이런식의 무시는 실제로 여성에게 단지 범행이 저질러지는 순간뿐만 아니라 일생을 통틀어 일관되게 악영향을 끼친다. 여성들은 언제나 너무 많은 행동의 제약을 감요받는다. 늘 맑은 정신으로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여차하면 목숨마져 내놓고 저항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어떤 부당한 성적 침해를 당하더라도 여성 자신이 유발한 것으로 치부되고 말 것이다.



강간 여부를 동의 아닌 저항, 범인 아닌 피해자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현재의 법인식 자체는 여성의 성은 남성의 성에 의해 통제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성의 불명등한 구조에서 파생된 인식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러하기에 열등한 존재로 규정되어진 여성의 의사소통체계가 사회적 의사소통으로 확립되지 않은 것은 어찌보면 현실에서는 당연한지도 모르겠다. 뿐만 아니라 이전의 피해자 자신의 일상이 사법적 판단준거가 된다는 것은 이것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이다. 여성의 성적자율권 확보의 측면에서 성적자율권에 대한 침해의 기준은 저항도, 거부도 아닌 바로 '동의'의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성기중심적인 성인식의 해체

성폭력을 성관계로만 인식하는 것은 피해자를 국한시킴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중의 피해를 안겨준다. 성폭력은 강간뿐 아니라 추행, 성적 희롱,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윤간, 이내강간 등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것이다. 즉, 성을 매개로 여성의 의사에 반해서 생긴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은 모두 성폭력인 것이며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 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인 것이다.

3.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은 단지 상대방의 '동의'없이 상대방의 '성적자율권'을 침해한 폭력에 대한 처벌의 기준을 정할 뿐인 것이다. 모호한 기준에 의해서, 단지 행위 자체만을 두고 가해자 중심에서 규정되는 복수의 개념들은 성적자

물권의 확보의 차원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 필요한 것은 행위 자체가 아닌 그것에 의한 실질적인 피해에 근거한 하나되고 통일된 담론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통일된 개념으로서의 '성폭력'에 대해서는 또다른 기준점이 필요하지 않다.

성폭력이라 함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근과 요구 및 기타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비언어적, 물리적인 행위가 가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언어적인 것은 '여자가...' 등의 여성비하적 발언부터 언어폭력까지로, 비언어적인 것은 어떤 상황이나 집단내에서의 피해자의 위치상 성적인 이유로 피해를 입을 경우라고 정의할 수 있다.

4. 처벌?

처벌이 필요한가? 처벌은 왜 필요한가? 처벌은 어떠한가? 처벌은 필요하다. 하지만, 개인을 공동체에서 매장시키고자 함이 아니다. 성폭력 문제 자체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여성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사회 구조의 문제이며, 그것을 유지하며 우리 삶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성에 관한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처벌은 상징적인 의미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동시에 처벌은 하나의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처벌의 기준은 특정한 누군가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성폭력에 대한 대안적인 담론을 구성하고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성폭력 학칙제정과 그 이전의 우리의 움직임에 대하여

성폭력 방지 및 예방을 위한 학칙(이하 성폭력 학칙) 제정은 이미 5년 전 신교수의 성적 괴롭힘(성희롱)사건시 이를 담당하던 학내 주체에 의해 제안되었다. 그리고 본부의 침묵속에 묻혀있던 성폭력 학칙제정이 오랜 싸움 끝에 97년을 거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신교수, 구교수 사건을 비롯, 끊이지않는 성폭력 사례들 속에서 학우들은 기존 사회의 법·제도의 보수성과 비능률성을 보아야했고, 이러한 모순된 현실에서 진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한 단계로써 성폭력 학칙 제정운동을 담론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성과로 지난해 대학신문과 관악 여성모임연대에서 공동 추진한 설문조사에서는 학우들의 90%이상이 성폭력 학칙제정에 찬성하여 지지를 표했고, 97년 학생회 선거에서 4개 중앙선본의 유례없는 공동 정책으로 이 운동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미 성폭력 학칙 제정은 우리 학우들 사이에서 공론화 되었다.

■ 왜 단대 학생회의 성폭력 학생회칙 제정을 주장하는가?

학우들의 공론을 바탕으로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는 본부의 침묵 속에 날이 갈수록 지연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현실적 필요성에 의해 학생회의 자치규약인 학생회칙에 성폭력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규정을 제정을 함께 해나가려 한다.

성폭력 학칙제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공백을 메꿀 공적 규약이 필요하

다. 이미 성폭력은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한다는 폭넓은 동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본부측의 외면으로 학칙제정이 지연되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 사건에 대응할 제도와 원칙이 없음으로해서 개인적 차원의 해결만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학생회 내부의 자치적 규약이 필요하다. 성폭력의 제도적 해결을 위한 학우들의 의지를 모아 성폭력 학칙제정을 본부측에 촉구하기 위함이다.

성폭력 학칙제정 운동은 기간의 답론화 작업을 거쳐 공론을 형성해가고 있다. 본부의 태업으로 지연되는 학칙제정운동에 하나의 움직임이 필요한 때다. 불성실과 침묵으로 일관하는 본부측에 성폭력 자치규약의 제정이 소수의 요구가 아닌 학생회 성원 일반의 동의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 학우 대중의 공통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본부측을 성폭력 학칙제정의 논의 테이블로 이끌어 내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이다. 성폭력 학칙제정 이후 학생들의 자치적 참여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우리는 성폭력 학칙제정과 그 운용에 교수뿐 아니라 학생, 교직원의 학내 3주체가 모두 참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학생회측의 역할과 운영 원칙을 사전에 학생회칙으로 정하고 자치적 운영 속에서 경험을 쌓아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사회통념 속에서 우리의 진보적 요구를 하나의 전범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기존 법·제도 및 사회통념은 성폭력을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정조의 문제 등 가부장적 소유관계로 사고하며 피해자에게 오히려 2, 3차의 폭력을 가해왔다. 우리는 학생회칙을 성폭력에 대한 우리의 진보적 원칙으로 제정함으로써 파급력을 미치고 이후 서울대 성폭력 학칙 및 여타 법, 규약에 전범으로 서게하려는 것이다.

사회대는 이렇게 일해나갈게요..

성폭력 학생회칙 제정의 일정

사회대 학생회칙 제 55조 3항에 의거하여 사회대 학생회원 5/100 이상의 연서가 있으면 단대 학생대표자 회의에 발의할 수 있다. 사회대 학생회는 학생회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는 성폭력 학칙제정을 위한 관악 공대위(이하 공대위)에 참여하여 성폭력 학생회칙 제정안을 작성하였다. 이를 본자보에서 알려내고 3월 17일 화요일 공청회를 열어 사회대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한후 연서를 받아 단학대회 개최 3일전 안전 상정 공고를 게시한후 단학대회에서 의결에 들어가려는 움직임이 있다.

공대는 이렇게 일해왔어요...

공대는 집단적인 자리에서 성폭력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에 주의하여 새내기 새로배움터의 내부규약으로써의 '성폭력 내규'를 만들었다. 방화중이었기 때문에 공대 운영위원회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새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른 단대와 함께 일상 학교 생활에 필요한 내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자연대는 요런 상황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

'여성권 확보와 성폭력 학칙 제정을 위한 자연대 여성위원회'가 생겼다. ~0~

작년 단대학생회 선거에서 자연대에서는 女聲이 3개 선본에 성폭력 학칙 제정을 각 선본의 선거 공약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학칙제정운동을 시작하였다.

겨울 방학동안 내부적으로 새로이 개강하는 1학기동안 좀더 대중적으로 펼쳐낼 활동들을 고민하던 중 개강직전 있었던 새내기 새로 배움터에서

'성폭력 촌극 사건'이 발생하였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장기자랑 시간에 고연되던 촌극중에 한 남성이 페니스를 과시하며, 여성을 감간했던 것입니다. 그 촌극은 일부 학우들의 거친 항의로 중단되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은 호려지고 과간 대립, 검열철폐(?) 등의 다른 논쟁들이 있었다. 女聲은 현재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이렇게 여성 배제적이고, 폭력적인 사회문화가 너무 자연스럽게 공개적으로 들어날 수 있었던 현실에 경악했으며, 그날밤 바로 이 문제에 대해 자보작업에 들어가 문제의 본질이 성폭력임을 밝히고, 공연 단위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그리고 자연대 학생회에는 자연대 운위원과 女聲 1인이 참가하는 성폭력 학치제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그리고 운위원들에게 반/과 총회, 교양학교 등의 자리에서 이 문제, 혹은 성폭력 학치제정에 대해 대중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은 다 받아들여 졌다. 개감전 공연 단위는 공개 사과문을 게재하였다. 그리고 위원회의 경우, 단순히 학치 제정뿐만 아니라 남성 중심적 문화 그 자체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담보하기 위하여 '여성 권확보와 성폭력 학치제정을 위한 자연대 여성위원회'(이하 자연대 여위)를 구성하게 되었다. 현재 자연대 9개 단위중 5개 단위의 책들이 결합하고 있으며, 女聲과 자연대 학생회에서 같이 결합해 있다.

자연대 여위의 위상은 자연대 학생회의 특별기구이다. 그리고 여위의 사업으로써 성폭력 학치제정운동은 1학기 자연대 학생 대표자 대회에서 그 기초와 활동 계획을 인준받을 것이다. 그리고 1학기와 방학동안의 활동의 성과를 모아 2학기 자학대회에서 일단 학생회칙에 성폭력 내규를 집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철의 노동자'에 '단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말이 나오지. 그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죽이는 사회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자. 우리의 인간다움을 펼쳐내자.

이런일 저만 겪는 거 아니죠?

책상 정리를 하다가 내 새내기적 노트를 찾았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꽤 오래된 것 같다. 수업 시간에 필기는 안하고 판지만 했나보다. 깨알 같은 글씨들.

오늘은 학회 별대식이 있는 날이다. 선배들이 부모님께서는 MT간다고 하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말했다. 좀 썰리긴 하지만 나도 다 큰 놈두 사는 예뻐서점 늦게까지 남아 선배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술도 마셔보고, 뼈다귀 해장국도 먹어보고 싶다. 엄마, 아빠는 날 그리도 못 만나?

참. 엄마 아빠가 날 못 믿으신 건가, 세상을 못 믿으신 것이지... 내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긴 했지. 지금 같으면 그렇게 술 퍼마시고 밤늦게 다니라고 해도 못 할 것 같다. 무서워서....

어전혀 선배들은 밥을 먹고는 1시간 이상어나 썰을 쳤다. 선배들은 마냥 즐거운 듯 했지만 난 너무나 지겹기만 했다. 마침 한 남자 선배가 이제 끝내자며, "야, 누구 하나 썰 먹으면 내려가자."고 했다. '꿀을 먹는다? 그게 뭐지?' 다른 아이들이 모두 웃길래 나도 본위키 깨진 애플까 싶어 그냥 넣어갔다. 그건 강간당하는 것이라고 한 선배가 설명했기 때문이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돌었지만 내 안에서조차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다.

맞어, 그때 그런 얘기에다 충격 받은 했지. 그건 음담패설 축에도 끼지



못했던 것이었구만.

역시나 H소주방으로 우리 별대식을 하러 내려갔다. 신입생 환영회나 개강 잔치 때보다도 대선배들이 더 많이 온 것 같았다. 하지만 여자 선배는 그리 몇 명 되지 않았다. 서로 이야기하고.... 학회장이 2차를 가자며 자리를 정리하자고 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꽤 취해 있었다. 아, 나도 일어서려는 순간 주춤했다. '아이고, 걸지도 못하겠는걸. 앉아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때 내게 다가서는 한 남자 선배. "괜찮니? 자, 내 팔 잡고." 하며 온근스럽게 내 팔을 잡았다. 거드랑이를 파고드는 손이 어쩐지 이상했다. "괜찮아요, 선배님." 하며 손을 빼려했다. "팔장도 아니고 왜 거드랑이에 손을 넣고 있는 것이야..." 어쨌든 난 그 선배의 팔에 매달려 그 곳을 나왔다. 파가 부르고, 동지가 부르고, 2차는 호프집, 2차로 가면 공복길에서 그 선배는 "어지럽지 않아? 좀 앉았다 걸까?" 하고 물었다. "아니, 괜찮아요." 내 대답에는 아랑곳 하지도 않고 "좀 여기 앉아." 하며 그 선배는 어느 집 대문 앞에서 날 이끌고는 내 어깨를 감싸며 쫓고려 앉지 않는가. 난 그냥 앉았다. "자, 기대." 무슨 자기가 뭐나 된다고. "저 안 취했어요, 괜찮아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선배는 내 머리를 자기 어깨에 얹었다. 그러더니 그 선배의 얼굴이 내 얼굴 바로 앞으로 다가왔다. 손은 내 어깨를 감싼채로. 난 어깨를 바들 떨었다. 날 좋아한다나. '아니, 우리 서로 얼굴과 이름만 알 뿐인걸. 그리고 이선배는 모과 어선배와 C.C.가 아니던가.' 난 웃으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오빠, 그 언니 있잖아요." 했다. "왜, 너도 좋아하고, 게도 좋아하면 안돼?" 난 어떻게 해야 할는지 갑자기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가능한한 그 선배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행동을 취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 난 별

떡 일어나. "썰썰하다. 사람들아 기다리겠어요. 빨리 들어가요." 라고 말하며, 그 선배를 끌었다. 난 집에 가지 않고 남은 것이 웬지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다. 술자리도 그다지 즐겁지도 않고, 웬지 내가 '형석이 나쁜' 애가 된 것만 같았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너무나 화가 났다. '왜 그때 내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못했나... 괴로운 건 나인데 왜 내가 그 사람 입장을 생각했던 것이지.... 내일부터 그 선배 얼굴을 어떻게 보나?... 왜 내가 꺼려져야 하지? 잘못된 건 그 사람인데 ... 그때와 그 기분이 떠올라 질때면 토할 것만 같아.....'

어쨌든 난 다음날부터도 그 선배에게 그 전과 다름없이 인사를 했고 그 선배 역시 내게 그랬다. '기억을 못하는 것인가... 기억 못하는 척 하는 것이겠지. 그럼 더 나쁜 사람이지....' 나에게 그 상처는 꽤 오래 갔던 것 같다. 그리고 관악에서 1학년을 보내고.... 2학년을 보내고.... 3학년을 보내고. 이제는 그런 일이 비밀비재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일부러 술자리가 있으면 늦게까지 남아 아이들을 챙기곤 한다. 새내기들이 나와 똑같은 길을 걷게 될까봐... 하지만 그 외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 이후의 술자리나, MT 갔을 때도 다른 선배들이 끝날 그러는 것을 많이 보았고, 또 아이들이 고민된다며 내게 찾아와 하소연하기도 했다.

괜히 노트를 꺼내봤다는 생각만 든다. 답답하다.....



우리 이런거 한번 생각해봐요...^ ^;

소개팅, 미팅에 관한 이야기

먼저... 소개팅이나 미팅은 왜 하지?

남자선배들이 미팅에 가려면, 이야기 주머니와 지갑이 두둑해야 한다고 했거든.. 나는 말주변도 별로 없구... 돈은... ^^; 그럼 난 미팅에 못나가나?

예들이 그러는데 나처럼 키도 작고, 퉁퉁하고 그저 평범한 여자애들은 미팅가면 폭탄이라고 싫어한다는데... 하지만 나도 미팅에 나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연애에서 C.C.까지

연애를 시작할 때에는 잘 몰랐지만, 과거를 켜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색해졌습니다. 친했던 친구도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하면 괜히 조심스러워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은 것이 허용되는 동시에 우리가 공동체에서 멀어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한 선후배, 혹은 친한 친구 사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어색한



시선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 친밀한 관계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일까요? 왜 연애하는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는 특별한 규범이 필요한거죠?

화장실에 관한 찜찜한 이야기

공대 여학우 잠적하는 그리 길지도 않는 쉬는 시간에 왜 열 건물까지 뛰어갔다 올까요?

① 심심해서 ② 졸려서 운동하려고 ③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벌어진 이야기



: 아아앗! 너 생리대 있니?



: 아아니. 없는데



: 어떡하지 자판기는 없나?



: 아 내가 1년동안 학교다니면서 생리대 자판기는 본적이 없어... 사회대에는 있다고 하던데..



: 아 언제 거기까지 가.. 어거 큰일인걸..



일상생활의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

'98 세내기 여학우는 사회에서 '성폭력'이니 '성희롱' 같은 일들이 난무한다는 얘길 듣고 우울했지만 대학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내기 여학우가 중 MT를 갑니다.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해줘도 되겠죠?

올해 대학에 합격한 뽕질어는 오늘도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엇! 이게 뭐지...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니 지하철 역사에도 저런 광고문이 붙어있던데.. 무슨 말이지? 처벌이라고? 지하철 안에서 무릎꿇고 손이라도 두게 하겠다는 건가??

... 몇 주전부터 지하철 성추행 예방을 위한 차량내 방송과 역내 광고문 부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뽕질어의 반응은 이러했는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노래가사에 대한 이야기

오사이 친구들끼리 노래방에 가는 일이 자주 있었다. 난 항상 가사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어느날 가사를 유심히 보면서... 참 우습다는 생각을 했다.



'니가 다른 여절 좋아한다고 해서 힘든 다이어트 참아왔는데... 니가 야한 여자 좋아한다고 해서 그런 종류의 옷만 샀는데... 니가 남자많은 여절 싫다고 해서 그저 조심하게 지내왔는데...'

참 웃긴 여자다. 남자친구가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한다는게 말이 되나?

'넌 내꺼라는 말을 듣고 싶어~'

사람이 무슨 물건인가? 니꺼 내꺼하개?

'기다려.. 내가 달려갈게 .. 가전건 순정박엔 없지만 내여자 울리진 않을꺼야...'

뭐야.. 무슨 영자병인가?

노래가사들이 왜들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이상한건가?



편집 후기



라라라....

드디어 다 끝났다...

이 자로집(?)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썸... 공대위를 꾸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수고한다는 말과.. (나도 포함해서 ^^:)

계속 노력해 달라는 말을 하고 싶다.

글을 써준 윤희랑 주영이랑 지성이랑

그리고 문제맨드느라 고생한 수경이랑 서진이랑

다들 너무 맛있는거 같애... 하하.. "o"

그리고 누구보다 내가 먼저 학교를 나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노력가사에 대해 감사하기

이제, 친구들끼리 노력하게 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이 노력 가
사에는 세 권있다. 권1과 권2, 권3이다. 이노력 가사를 포함한 권1과 권2, 권3
은 다음 세권을 만든다.

